

“하도급단가 낮추려 재입찰은 부당”

서울고법 “○○건설에 과징금 부과 정당” 판결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음에도 가격을 더 낮추기 위해 상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한 ○○건설에 3억 4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 대금을 정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경쟁입찰을 실시해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는데도 바로 재입찰을 해 당초 최저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는 것도 이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초 입찰 때 최저입찰가가 ○○건설이 정한 예정가격을 초과한다는 것은 내부적 사정에 불과해 재입찰을 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유라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은 2009년 5~6월 인천 청라지구 구조물 공사, 대구 수성○○아파트 판넬 및 창호공사 등 5건 공사의 하도급업체를 지명경쟁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초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업체가 있음에도 상위 2~3개 업체를 대상으로 재입찰을 해 1억5900여만원의 낙찰가를 낮췄다.

이를 적발한 공정위가 지난해 6월30일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에 해당한다며 3억4300만원의 과징금을 매기고 60일 이내에 납부할 것을 결정하자 ○○건설은 소송을 냈었다.●



일용근로자가 받지 못한 임금·퇴직금 “명의 빌려준 업체엔 책임없다”

법원 “계약형식보다 실질 근로관계가 중요” 원고패소 판결

명의를 빌려준 업체는 명의를 빌린 건설업체가 고용한 일용근로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없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제3민사부는 건설업 명의 대여자를 상대로 일용근로자들이 제기한 임금지급 청구소송 2심에서 “건설업 명의를 빌려준 데서 나아가 원고 등의 작업내용과 조건 등을 결정하거나 원고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는 점에 대한 주장·입증이 없는 한 피고와 원고 사이에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됐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원고 등의 사용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앞서 “어떤 근로자에 대해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누가 업무내용을 정하고, 업무수행과정에서도 누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했는지, 누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이에 구속을 받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빌린 명의로 어떤 합의가 이뤄졌더라도 피고는 합의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하수급인의 지위에서 받는 공사대금 또는 공사대금 중 임금 상당액을 원고 등이 피고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패소한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소액사건이므로 상고이유가 없다며 기각 결정했다.

이 사건 원고들은 일용근로자 7명으로, 개인사업자가 도장공사 전문건설업체로부터 면허를 빌려 이들을 고용, 근린생활시설 신축 도장공사를 하도급으로 진행하다가 임금을 주지 않자 명의대여 업체를 상대로 총 972만여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